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1. . . (제 회)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0 0 0 (국토교통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1.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가덕도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을 위하여 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변경하거나 실시계획을 수립·승인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하거나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하며, 위반행위에 따른 그 처분에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제정(법률 제 17938, 2021. 3. 16. 공포, 2021. 9. 17. 시행)됨에 따라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이 수반되는 주요 변경사항, 민간개발자의 수익성을 보장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대상 및 허가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 가능한 과징금의 금액 및 징수방법 등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안 제3조)

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을 변경해야 하는 중요한 사항의 변경 대상으로 활주로의 신설 또는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등의 경우로 규정하고,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

에는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도록 함.

나. 사업의 시행허가를 할 때 국가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시설(안 제4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허가를 할 때 국가에 귀속없이 허가 할 수 있는 대상으로 신공항건설사업과 관계된 토지 및 시설 중 공항구역 내 설치하는 공항의 유지·보수를 위한 시설, 공항이용객 편의시설, 항공기 급유시설 및 유류의 저장·관리 시설 및 항공화물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시설 등의 공항시설과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항시설로 규정함.

다.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승인(안 제5조)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신공항건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라. 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안 제6조)

신공항건설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경계로부터 10킬로미터의 범위 중 「공항시설법」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 「항공소음 방지 침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추진되는 도시개발·정비·재생, 지역개발 등의 사업에 대하여 주변지역개발사업으로 규정하는 한편 그와 관련한 지원 또는 우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함.

마. 신공항 건립추진단 구성 및 운영(안 제7조)

신공항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신공항 건립추진단을 구성하고,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도록 함.

바. 신공항건설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안 제8조)

신공항건설사업을 위하여 국가가 보조 또는 융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사. 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안 제9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에서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수익성을 보장하는 범위에서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등의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을 부여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밖에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함.

자. 지역기업의 우대(안 제10조)

신공항건설과 관련한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을 체결할 때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지방자치단체에 주된 영업소를 두고 있는 자에 대하여 우대할 수 있는 계약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등의 구매 및 「엔지

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 등에 관한 계약으로 하고, 이 경우 우대기준은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정하도록 함.

차. 위반행위별 과징금 금액, 부과 및 징수 방법(안 제12조, 제13조, 제14조)

사업시행자에게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 과징금 부과 및 징수방법 등을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21. 5. 21. ~ 2021. 6.3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 - 건

대통령령 제 호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관련시설의 조성 등)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마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신공항건설사업의 건설 종사자를 위한 임시숙소의 건설 등 사업시행자(법 제9조에 따른 신공항건설사업의 시행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시행하는 신공항의 건설과 관련한 시설의 조성 등의 사업을 말한다.

제2장 가덕도신공항 건설 및 지원 등

제3조(가덕도신공항 건설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변경 등) ① 법 제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면적이 당초 계획보다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

여야 하는 면적 이상 늘어나는 신공항건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2. 활주로의 신설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3. 활주로의 길이 변경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추가하는 경우

② 법 제8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공항시설법」 제3조제4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기본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에 관한 의견제시 요청을 받은 관계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기본계획안을 14일 이상 주민이 열람하게 하고 그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사항을 각각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1. 기본계획을 수립한 경우: 법 제8조제2항 각 호의 사항
2. 기본계획을 변경한 경우: 변경된 사항

제4조(국가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시설) 법 제9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1. 공항구역에 설치하는 공항시설로서 「공항시설법 시행령」 제3조제2호, 제4호(운항지원시설은 제외한다) 또는 제5호의 시설
2. 그 밖에 공항구역 밖에 설치하는 공항시설

제5조(실시계획의 수립·승인)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신공항건설사업 시행에 관한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신공항건설

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허가를 받은 날(해당 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해당 단계별 허가를 받은 날을 말한다)부터 3년 이내에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주변개발예정지역의 지정 등)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지역 중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한다.

1. 「공항시설법」 제2조제14호에 따라 장애물 제한표면으로 정한 구역
2.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항에 따라 지정·고시한 소음대책지역
3.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공항 주변지역 주민들의 주거개선이나 생활편의 개선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주변개발예정지역으로 지정하였을 때에는 해당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③ 주변지역개발사업은 법 제12조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주변개발예정지역에서 시행 중이거나 시행할 예정인 기반시설의 설치·개량, 도시개

발·정비·재생, 지역개발, 스마트도시 조성 등에 관한 사업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시행자의 지정 및 추진절차 등은 각 해당 사업 등의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관계법령에 따른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선정된 주변지역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원 또는 우대 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7조(신공항 건립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13조에 따른 신공항 건립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은 단장 1명과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 추진단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른다.

제8조(보조 또는 용자) 법 제14조에 따라 국가가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는 구체적인 항목과 지원 비율 등은 국토교통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9조(민간자본유치사업의 지원) ① 법 제1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격을 말한다.

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단지개발사업
2.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

발사업

4.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

5. 「택지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② 법 제17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민이주대책 및 손실보상 업무의 대행
2. 그 밖에 민간투자자의 개발사업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지역기업의 우대) ① 법 제1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말한다.

1. 공사계약: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공사 및 전문공사,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에 관한 계약
2. 물품 제조·구매 계약: 제1호에 따른 공사를 시행하기 위한 각종 기자재 및 기계류, 사무기기, 전산장비 등의 제조·구매 계약
3. 용역계약: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활동과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물의 설계, 공사감리의 업무에 관한 용역계약

② 사업시행자는 계약의 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정한다.

③ 사업시행자는 제2항에 따라 정한 지역기업의 우대기준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하며, 신공항건설예정지역의 관할 및 인근 광역시장 및 도지사에게 그 광역시 및 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3장 보 칙

제11조(허가의 취소 등에 관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의 취소 또는 허가·승인의 효력의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 등의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사업의 명칭 또는 실시계획의 명칭
2. 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와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3. 처분의 내용 및 사유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2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허가·승인의 효력 정지, 공사의 중지 명령을 갈음하여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와 같다.

제13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해당 과징금의 금액을 구체적으로 적어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내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에 과징금을 낼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7일 이내에 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④ 과징금의 수납기관은 제2항에 따른 과징금을 받으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과징금은 나누어 낼 수 없다.

제1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2조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통지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하면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7일 이내에 독촉장을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독촉장 발급일부터 10일 이내로 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독촉을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과징금을 강제징수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사업시행자에 대한 위반행위의 종류별 과징금의 금액
(제13조 관련)

1. 일반기준

가.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징금을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나.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과징금 금액의 상한을 넘을 수 없다.

- 1)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공중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 2) 법 위반상태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 3)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및 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 금액을 늘릴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징금의 금액
가. 법 제10조제3항을 위반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외의 사업시행자가 승인을 받지 않고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2호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않은 실시계획에 따라 시행한 공사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나.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 제3호	·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실시계획을 위반하여 시행한 공사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공사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5억원으로 한다.

<비 고>

공사금액은 설계도서에 기재된 공사금액으로 하되, 설계도서가 없는 경우 공사에 실제 소요된 금액으로 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국토교통부 공항정책과	
연 락 처	(044) 201 - 4316